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25
----------	-------

발의연월일 : 2025. 11. 5.

발 의 자 : 정일영 · 안도걸 · 장종태
조승래 · 전현희 · 허성무
이재강 · 박용갑 · 문금주
이훈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공제수준은 '97년 이후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물가와 자산가격은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공제수준은 변화 없이 유지된 것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97년 당시 전체 피상속인 중 약 1%에 대해 과세하던 것에서 '24년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5.9%가 납부하는 상황이 되었음. 특히 서울지역은 전체 피상속인의 15.5%('24년 기준)가 상속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이는 중산층의 상속세 세부담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상속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인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던 가족의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최소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것은 방지하고 남은 가족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상속세 공제 수준을 상향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배우자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해온 기여도가 보다 더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배우자 최저 공제 금액이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4조 및 제28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5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5억원”을 각각 “7억원”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억원”을 “7억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5억원”을 “7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u>5억원</u>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u>5억원</u> 을 공제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10억원</u> ----- ----- <u>10억원</u> ----- -----.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u>5억원</u>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u>5억원</u> 을 공제한다.	제21조(일괄공제) ① ----- ----- ----- ----- ----- <u>7억원</u> ----- -----. ----- ----- ----- ----- <u>7억원</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 ----- ----- -----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 3. (생략)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7억 원

1. ~ 3. (현행과 같음)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

-----.

-7억 원-
-----.

② (현행과 같음)